
약 관

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2

()

11 [1]
12 [2]
13 []
14 []
15 []
16 []
17 []

3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4

26 【 】
27 【 가】
28 【 】
29 【 】
30 【 】
31 【 가 】
32 【 가 】
33 【 】
34 【 】

5

35 【 】
36 【 】
37 【 】

6

38 【 】
39 【 】
40 【 】
41 【 】
42 【 】
43 【 】
44 【 】
45 【 】
46 【 】
47 【 】

48 []
49 []
50 []
51 [가]
52 []
53 []
54 []
55 []
56 []

1

1 【 】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 】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제1보험기간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제47조(약관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관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약관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6.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7호 및 제9호,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4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7.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9.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연금개시시점의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0.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1.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12. "특별계정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기준가격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5 【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분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35 () 가

가 (證明)

가

가

12 【 2 】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이하 "납입기일"이라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13 【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납입 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선택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로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경우 납입기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로 하며,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는 납입보험료를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을 이체금액으로 합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납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3 ()

18 【 】

가 (1")
가 : 가 :
1. 1 가 :
2. 2 가 :

19 【 】

18 () 1 가
(失踪宣告)
,
27 () 2 ,
" "(2) (")
)
가

18 () 1 가

18 () 2

20 【 】

가 가
(解止)

1. 가 가

() 2

2. 가
가

3. 가
1 가

1. 1 1 ()

2. 1 2

3. 1 3

21 【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2 【 】

- ① 이 보험의 제2보험기간 중 지급되는 연금액 및 연금지급 개시 후 책임준비금에 대한 부리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llianzhana.com)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23 【 】

"

"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28 【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인덱스(INDEX)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지수) 등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3. 주식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② 제1항의 투자대상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9 【 】

①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 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단위(6개월, 연단위중 택일)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

약자가 선택한 단위(6개월, 연단위중 택일)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단위(6개월, 연단위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30 【 】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판매 중인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추가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③ 계약자는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펀드 적립금 이전시에는 10만원이상 이전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의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4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⑤ 제3항에 의해 펀드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차회 이후 특별계정투입보험료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투입됩니다.
- ⑥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⑦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제4항의 현금 이전시 공제합니다.
- ⑧ 제3항의 경우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31 【 가 】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32 【 가 】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3 【 】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신탁보수,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34 【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30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

가 , , ,
1
"
1
() 가
35 () 가 1

37 【 】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38 【 】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

43 【 】
 42 () 3 , , , . , , .
 10 . . .
 18 () 2 가 7 가 , 1 . (.
 3) " " . (. .
) 1 36 (. . .
 가 1 . . .
 , 가 , . . .
 가 가

- 44 【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5 【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1)

1. (18 1)

	(1) 가	
(1)	500	
	+	
(2)		10%
	+	

2. (18 2)

, , 가
.

가.

	(2)	
	가	
	(,)	
(10 20)		
	(,)	
10		
(5%, 10%)		, 11
10		
	(10 20	
)	

	(2) (5 , 7 , 10 , 15 , 20)
	(,)

	(2) 가
	(,) ()

- () 1. 「 」 4 () 5 “ ”
2. 「 」 4 () 6
가
7 () 3
46 () 4
3. 1 “ ” (,
) “ 2 ”

4. 「 1 」 「 2 」
「 」
. 2
, 2
가 , 가
5. 「 」 (3.0%) 1 가
6. , 3 , 6
「 」
.
7. 10 (20)
가 10 (20)
. (5 , 7 , 10 , 15 , 20) 가
(5 , 7 , 10 , 15 , 20)
8. ,
(5 , 7 , 10 , 15 , 20)
" "
9. 「 」
(,) 「 」
() 「 」
「 」 " .

(2)

(,

)

* 4 (2002-1 ,
2003. 1. 1.) “ ”

1.	V01~V09
2.	V10~V19
3.	V20~V29
4.	V30~V39
5.	V40~V49
6.	V50~V59
7.	V60~V69
8.	V70~V79
9. ()	V80~V89
10.	V90~V94
11.	V95~V97
12.	V98~V99
13.	W00~W19
14.	W20~W49
15.	W50~W64
16.	W65~W74
17.	W75~W84
18. ,	W85~W99
19. ,	X00~X09
20. 가	X10~X19

21.					X20~X29
22.					X30~X39
23.					X40~X49
24.					X58~X59
25. 가					X85~Y09
26.					Y10~Y34
27.					Y35~Y36
28.				,	Y40~Y59
29.					Y60~Y69
30.					Y70~Y82
31.					Y83~Y84
32.		2	1	1	

- “ ”
- “ (L23.3) ”
- “ , 가 ”
- “ A00 ~ R99 가 가 ”
- “ ”
- “ ”
- “ , ”
- “ ”
- “ ” “ (Y35.5) ”

(3)

(43 2)

(18 1)

(18 2)

- 가 7

	가

	+ 1%

- 가 7

	가 (, 가)

	(, 가)	
	1	50%
	1	1%
	+ 1%	

(23 1)

	가	
	1	50%
	1	1%
	+ 1%	

- () 1. 1 「 「 」 ,
 2 「 」 . 25 ()
 2. 가 .
 3. .